

알림마당

알림마당	자료실	의료분쟁 사례			
------	-----	---------	--	--	--

조정중재사례

⌵ 조정중재사례	감정사례와 예방 TIP	상담사례
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

무혈성 괴사로 대퇴골 수술 후 보행장애 및 통증이 발생한 사례			
진료과목	정형외과	조회수	6000
처리결과	합의성립		
키워드	#무혈성	#괴사	#대퇴골 #수술 #보행장애 #통증

○ 단건보기 ● 복수건보기

사건개요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 방안 처리결과

사건개요

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

신청인(남/60대)은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자로 2021년 5월 5-6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.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하였고, 당시 우측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 하지 저림도 호소하여 입원 후 신경외과 협진을 예정하였다.

외래 내원 2일 뒤 수술 전 검사(혈액검사, Rt hip CT, scanogram)를 받고, 검사 3일 뒤 입원하여 다음날 척추마취 하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. 수술 후 수술부위 베개(pillow) 적용 및 내전방지자세를 안내받았다.

수술 3일 뒤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였고, 허리 및 우측 둔부 통증에 대해 신경외과와 협진하여 요추 MRI를 촬영하고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소견으로 신경차단술을 받고, 같은 달 수술 후 16일째 퇴원하였다.

2021년 7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, 고관절 부위 회복 후 허리증상에 대한 수술 설명을 들었다.

2021년 8월 외래내원 시 다리가 당기는 증상과 우측 무릎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영상검사를 받았고, 3개월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.

2021년 9월 우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□□병원에 내원하였고, 우측 하지의 길어짐으로 깔창 착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. 우측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으로 제4-5번, 제5-6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같은 달 수술치료(후방요추간유합술, PLIF L5-6)를 받았다.

2021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우측 다리가 길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면담을 받았다.

2022년 2월 □□병원에서 작성된 소견서에 따르면, 현재 다리길이 차이는 약 1cm이 있고, 우측 관절의 대퇴스템(femoral stem)이 내반(varus)된 상태로 삽입되어 수술상태로, 다리 길이가 크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보행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이다.

분쟁의 요지

신청인: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 수술 후 우측 다리가 3-4cm 길어지고, 20도 정도 벌어진 상태로 다리 통증이 심하다.

피신청인: 우측 하지 다리가 길어졌다는 사항은 객관적 X-ray 소견으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. 다리길이 차이는 수술적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전혀 없으며, 골반 기울어짐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보인다.

- 수술 적응증 및 수술 술기의 적절성
- 수술 후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
- 설명의 적절성

분쟁해결방안

감정결과의 요지

본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술술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한다.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.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적응증, 술기에는 이상이 없었다. 수술 전 설명과 수술 후 추시관찰도 적절하였으며, 현재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지부동의 정도는 약 10mm 이내로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추후 골반경사가 개선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.

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신청인은 치료비, 향후 치료비, 휴업손해, 일실이익, 위자료 등 총 금 196,924,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.

처리결과

처리결과

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

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,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.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1회 진료 및 이후 주 2회씩 3개월 동안의 재활치료를 무상으로 시행해주고,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.

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,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·형사상 청구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며,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[목록](#)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

☒ 매우만족 ☐ 만족 ☐ 보통 ☐ 불만족 ☐ 매우불만족

평가하기
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[저작권 안내](#)[오시는 길](#)[사이트맵](#)[관련 사이트 링크](#)

(04637)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(남대문로5가) T타워(8층)

의료분쟁 상담센터 : 1670-2545 관리자 E-mail : kmedi@k-medi.or.kr

Copyright © 2022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. All Rights Reserved.

정부부처 관련기관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